

212.충북스포츠센터 관리규정

충북스포츠센터 관리규정

제1장 8개 훈련장 사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스포츠 센터(이하 “스포츠센터”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입주자”라 함은 사무실 또는 훈련장에 입주한 경기단체와 그 구성원을 말한다.
- ②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는 자로서 운동경기,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 ③ “관리인”이라 함은 충청북도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직원을 말한다.
- ④ “시설물”이라 함은 다목적체육관, 훈련장, 경기단체사무실, 합숙소, 휴게실 등 스포츠센터내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⑤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제2조 4호의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을 말한다.

제3조(직급및정원) ① 스포츠 센터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직 급	정원(인)	주 요 업 무
기계·전기·소방·난방 가스·환경관리(7-9급)	1(남)	기계·전기·소방·난방가스 정화조설비·유지보수관리
관 리 직 (8-9급)	1(남)	센터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환경정리 및 청소(일용)	1(여)	주변환경정리 및 청소

- ② 직원의 급여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호봉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③ 위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충북 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에 준한다.

제4조(입주및사용허가) ① 시설물에 입주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자는 충청북도체육회장(이하“체육회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 신청서를 입주 7일전까지 체육회장에게 제출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때는 예외로 하며 체육회장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③ 충북스포츠센터내 훈련8개 종목 훈련장 입주허가는 투기종목과 충북체육발전, 경기력 향상의 기여도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체육회장이 입주를 허가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입주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입주허가를 신청하여 체육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8개 훈련장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체육회 주최·주관하는 행사
2. 해당경기단체의 도대표선수 훈련
3.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한 훈련
4. 전국규모대회
5. 해당가맹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② 체육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스포츠센터가 공공건물임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시설물의 화재, 도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위생, 환경정리 등 건물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및사용자의준수사항)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스포츠 센터 사용시간은 지하1층에서 3층까지 훈련관은 06:00~20:00, 다목적체육관은 06:00~21:00까지로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 ② 입주자가 야간근무를 필요로 할시는 사전 야간근무 내용을 보고하고 스포츠센터 직원에게 허가를 얻은후 근무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는 입주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직원 또는 관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 ④ 입주자는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 ⑤ 입주자(단체)가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시는 그 시설물의 사용권을 타 입주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⑥ 입주자는 부과된 관리비(전기.난방 등)를 매월 25일까지 체육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입주자는 훈련장 및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서를 체육회로 제출한다. (가입자 : 각 입주자(협회), 수령자 : 충청북도 체육회)
- ⑧ 스포츠센터 내에서는 음주, 도박, 음란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⑨ 스포츠센터 내에서는 사적으로 외부인사와의 회합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⑩ 퇴근시에는 반드시 소등하고, 화기점검을 한 후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⑪ 스포츠센터내 음식물 반입과 동물의 반입은 금지한다.
- ⑫ 입주자(단체)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각종 회원회비 징수 등 금품수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개인강습금지)
(단, 협회(연맹)주관으로 정규훈련시간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받고 강습 할수 있다.)

◆ 종목별 강습

층 별	훈 련 장	사용시간	월 강습료	비 고
1층	펜 싱	12:00-14:00	20,000	성인.어린이 구분없음
		18:00-21:00	30,000	
	레슬링	12:00-14:00	20,000	"
		18:00-21:00	30,000	
2층	우 슈	12:00-14:00	20,000	"
		18:00-21:00	30,000	
	복 싱	12:00-14:00	20,000	"
		18:00-21:00	30,000	
3층	태권도	12:00-14:00	20,000	"
		18:00-21:00	30,000	
	검 도	12:00-14:00	20,000	"
		18:00-21:00	30,000	
4층	다목적 체육관	06:00-21:00	별도이용안내	

○ 사용시간별 적정인원(10인이상) 미달시 강습을 할 수 없음.
 ○ 사용은 사용시간내 할수 있으나, 강습은 정해진 시간만 가능.
 ○ 종목 및 강습요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장비 및 도구는 자신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
 ○ 각 협회(연맹)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시 강습을 할수 없음.
 ○ 협회(연맹)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 ⑬ 스포츠 센터 내에서는 전열기구 및 LPG, 휴대용 가스기구 등 화기와 관련된 기기는 정해진 장소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⑭ 입주자(단체)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입주자 합동으로 건물 내·외 대청소를 실시하고 체육회로부터 시설물 점검을 받는다.
- ⑮ 입주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의 청소는 입주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⑯ 승강기는 근무시간에 한하여 운행하되, 스포츠센터의 형편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절 할 수 있다.
- ⑰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 또는 행사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부담)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① 입주자는 해당 경기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및 훈련장의 관리비(전기,난방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훈련장 출입) 각 훈련장사용 단체는 훈련에 관계된 선수 및 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시설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③ 체육회(스포츠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② 시설물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 ③ 정상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는 자.
- ② 술에 만취된 자.
- 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④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⑤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체육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 ②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③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④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⑤ 체육회(스포츠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체육회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절대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 하여야 한다.

제15조(퇴거명령) 입주자가 규정 제 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위반시 체육회장은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다목적체육관 사용

제16조(다목적체육관 사용) ① 다목적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4)를 작성 제출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신청접수순에 의하며, 사용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일반 행사
2.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한 훈련 및 경기
3. 전국규모대회 및 도내 대회
4. 스포츠 센터 입주 가맹경기단체의 훈련
5.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및 행사

② 체육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항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한다.

1. 다목적체육관 사용과 관련된 모든 안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청소 및 정리정돈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규격봉투사용)
3. 사용시 상호간의 문제점이 발생할시는 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한다.
4. 장기 사용자(단체)는 매월 1일 은행계좌로 선불 납부한다.
5. 장기 사용자(단체) 계약은 1년 마다 한다.
6. 장기 사용자(단체) 임대료는 매년 계약시 상호간 조정이 가능하다.
7. 체육행사 이외의 어떠한 행위도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8. 주간에서 야간으로 이어지는 행사(체육·일반)는 주야행사 총금액의 20% 할증요금 으로 한다.
9. 모든행사시 기본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 사용료는 사용종료후 납부한다.

10. 행사장에서 화기사용 및 일체의 취사행위는 금한다.

11.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 즉시 퇴실을 명할수 있다.

④ 다목적 체육관 행사 및 사용 요금은 다음과 같다.

◆ 1일 사용요금

구 분	기본 사용료 (일)	전 기 요 금		난방요금 (시간당)	앰 프 (회당)	시 간
		전부점등 (시간당)	1/2점등 (시간당)			
체육단체 (주간)	60,000	3,000	1,500	10,000	10,000	09:00-18:00
(야간)	40,000	"	"	"	"	18:00-21:00
일반단체 (주간)	100,000	3,000	1,500	10,000	10,000	09:00-18:00
(야간)	80,000	"	"	"	"	18:00-21:00

○ 본 행사를 위한 준비기간도 기본 사용시간으로 적용

◆ 동호인 사용요금(월)

종 목	사용시간	주 체	이 용 요 금	비 고
생활체육	06:00~08:00	단 체	500,000(최저)-월	단체
		개 인	-	
동호인 (주5회)	09:00~12:00	단 체	400,000(최저)-월	단체
		개 인	1,000(일)-입장료	직영(강습별도)
	13:00~18:00	단 체	400,000(최저)-월	단체
		개 인	1,000(일)-입장료	직영(강습별도)
주3회	18:00~21:00	단 체	300,000(최저)-월	단체
		개 인	-	

○ 종목 및 사용요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장비 및 도구는 본인 및 단체가 구입 사용.
 ○ 생활체육동호인의 새벽 및 야간 이용시 월 전기료는 별도협의.
 ○ 모든행사시 체육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최우선으로 한다.

제3장 합숙소 사용

제17조(합숙소사용) ① 합숙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8)를 작성 제출하고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참가를 목적으로 강화훈련을 실시 하는 선수(팀)
2. 전국 시도대항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선수(팀)
3. 각종 전국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선수(팀)
4. 가맹경기단체가 주관하는 강화훈련 선수(팀)
5.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합숙소 사용허가는 각호의 조건으로 허가한다.

1. 합숙소 사용과 관련된 모든 안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합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계속 90일 이상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연중 18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3. 합숙소 입소 및 퇴소시 스포츠 센터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합숙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이때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물품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 합숙소 이용시 항시 감독자(임원, 코치, 교사 중)가 상주하여 선수(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청소 및 정리정돈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규격봉투사용)
6. 사용시 상호간의 문제점이 발생시는 담당직원의 지시에 의한다.
7. 합숙소 이용시 파손물품 및 집기는 즉시 현금으로 변상한다.
8. 숙소내에서 화기사용 및 일체의 취사행위는 금한다.
9. 숙소내 음식물 및 동물의 반입은 금한다.
10.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 즉시 퇴실을 명할수 있다
11. 합숙소 사용시 기본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한다. 부가 사용료는 사용종료일 오전까지 집기물 확인후 납부한다.

③ 합숙소의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23)

층 별	규격(명)	수량	사용요금	기 준	비 고
5층	15인	1	50,000	1박1실	
6층	15인	1	50,000	"	
7층	4인	7	20,000	"	
8층	4인	7	20,000	"	
합 계	86명	16실			

제18조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관계조례에 의한다.

물 품 인 수 인 계 서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위의 물품을 정히 인수인계함.

20 년 월 일

인 수 자

단 체 명 :

담당자성명 : (인)

인 계 자

단 체 명 :

담당자성명 : (인)

충청북도체육회장 귀하

다목적체육관 사용 신청서

○ 사용단체명 :

○ 대표자성명 : (인)

○ 사용일시 : 20 년 월 일 : 부터 ~ : 까지

○ 사용목적 :

○ 사용인원 : 명

구 분	사용시간 및 횟수	금 액	비 고
기본사용료			
전기요금	전부점등		
	1/2점등		
난방시간			

위와 같이 다목적 체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연 락 처 :

성 명 : (인)

충청북도체육회장 귀하

다목적 체육관 사용 협약서

- 사용 단체 명 :
- 대표자 성명 : (인)
- 사용 일시 : 20 년 월 일 : 부터 ~ : 까지
- 사용 목적 :
- 사용 인원 : 명

위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충북 스포츠 센터의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 사용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담당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사용자 >

단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충청북도체육회장 귀하

다목적 체육관 사용 계약서

- 단 체 명 :
- 성 명 : (인)
- 일 시 : 20 년 월 일 : 부터 ~ : 까지
- 인 원 : 명

구 분	사용시간 및 횟수	금 액	비 고
기본사용료			
전기요금	전부점등		
	1/2점등		
난방시간			

위와 같이 다목적 체육관 사용을 계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

충 청 북 도 체 육 회 장

다목적 체육관 사용 계약서

- 단 체 명 :
- 성 명 : (인)
- 일 시 : 20 년 월 일 : 부터 ~ : 까지
- 인 원 : 명

구 분	사용시간 및 횟수	금 액	비 고
기본사용료			
전기요금	전부점등		
	1/2점등		
난방시간			

위와 같이 다목적 체육관 사용을 계약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충 청 북 도 체 육 회 장

다목적 체육관 사용 영수증

- 단 체 명 :
- 성 명 :
- 일 시 : 20 년 월 일 : 부터 ~ : 까지
- 인 원 : 명

구 분	사용시간 및 횟수	금 액	비 고
기본사용료			
전기요금	전부점등		
	1/2점등		
난방시간			

다목적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체 육 회 장

다목적 체육관 사용 영수증

- 단 체 명 :
- 성 명 :
- 일 시 : 20 년 월 일 : 부터 ~ : 까지
- 인 원 : 명

구 분	사용시간 및 횟수	금 액	비 고
기본사용료			
전기요금	전부점등		
	1/2점등		
난방시간			

다목적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체 육 회 장

스포츠센터 합숙소 사용 신청서

○ 단 체 명 :

○ 성 명 : (인)

○ 합숙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층 별	호실번호	수량(실)	총인원	금 액
5층				
6층				
7층				
8층				
계				

위와 같이 스포츠센터 합숙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연 락 처 :

성 명 :

(인)

충청북도체육회장 귀하

스포츠센터 합숙소 사용 계약서

- 단 체 명 :
- 성 명 : (인)
- 합숙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층 별	호실번호	수량(실)	총인원	금 액
5층				
6층				
7층				
8층				
계				

위와 같이 스포츠센터 합숙소 사용을 계약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북도체육회장

스포츠 센터 합숙소 사용 계약서

- 단 체 명 :
- 성 명 : (인)
- 합숙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층 별	호실번호	수량(실)	총인원	금 액
5층				
6층				
7층				
8층				
계				

위와 같이 스포츠센터 합숙소 사용을 계약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북도체육회장

스포츠센터 합숙소 사용 영수증

- 단 체 명 :
- 성 명 : (인)
- 합숙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층 별	호실번호	수량(실)	총인원	금 액
5층				
6층				
7층				
8층				
계				

스포츠 센터 합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체 육 회 장

스포츠 센터 합숙소 사용 영수증

- 단 체 명 :
- 성 명 : (인)
- 합숙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층 별	호실번호	수량(실)	총인원	금 액
5층				
6층				
7층				
8층				
계				

스포츠센터 합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체 육 회 장

합숙소 사용 협약서

- 단 체 명 :
- 성 명 : (인)
- 합숙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층 별	호실번호	수량(실)	총인원
5층			
6층			
7층			
8층			

위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충북 스포츠 센터 합숙소의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 사용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사 용 자>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충 청 북 도 체 육 회 장